

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사유

- 가. 2008년 6월 8일자로 「부산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」가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등 개선사항을 반영하고
- 나.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 하고자 현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함.

2. 관련법령

「부산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」

3. 주요골자

- 가. 주차요금 부과방법 개선(안 제5조 제2항)
- 나. 주차요금의 반환 조건을 합리적으로 조정(안 제5조 제2항)
- 다.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할 수 있는 근거신설(안 제7조)
- 라. 공영주차장 관리위탁 방법 등을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맞도록 변경(안 제8조)

- 마. 노상주차장 하역주차 구획의 안내 표지판에 필요한 사항 추가 명시 등 신설(안 제12조)
- 바. 주거지전용주차장 배정을 받지 않고 주차한 자동차 견인조치 신설(안 제13조 제4항)

4. 검토의견

본 조례의 전부 개정 건은

- 2008년 6월 8일자로 「부산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」가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영주차장 관리위탁 과정의 각종 문제점 및 시설환경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고, 종전의 공영주차장 관리위탁자 중심의 일부 불합리하고 말썽의 소지가 있었던 조항들을 이용자 편의 위주로 개정된 점은 시의 적절한 조치로 생각되며
-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렵고 난해한 법률용어들을 이번 기회에 쉽고 친근한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코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

본 조례의 전부개정 건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2008. 10. 28

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여 기 선